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(황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83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. 11. 27.
발의자 : 황희·박재호·이원욱
윤관석·오제세·윤호중
강훈식·김철민·안호영
어기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법률상 그 요건이 추상적·포괄적 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. 이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하여 지도·감독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지도·감독권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33조 제1항).

법률 제 호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1항 중 “필요”를 “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(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국토교통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<u>필요하다고 인정되면</u>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</p>	<p>제33조(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·감독) ① ----- ----- ----- <u>개인정보의 보호 및</u> <u>전산자료의 목적 외 사용 방지</u> <u>등을 위하여 필요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